

#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신설

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,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‘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’를 신설했다.

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.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.[편집자 주]

노동부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골자로 한 ‘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’을 지난 4월 30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.

새로 신설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건설사업주가 동절기, 장마기에 날씨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 중에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경우, 그 지급액의 2/3 (일일 3만5천원 한도)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지원대상 시기는 하절기(6~8월)와 동절기(12월~익년 2월)이며, 1월간 공사중지기간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 일수에 대해 지원한다. 다만 주·휴일 등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

또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에 대해 지원한다.

노동부는 건설업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신설된 이 제도의 성과에 따라 2010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이 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■ 대상

하절기,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·허가·등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지원되며, 무면허 사업주는 제외한다.

### ■ 요건

- ① 하절기(6~8월), 동절기(12~2월)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월 6일을 초과해야 한다.
- ② 눈,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됐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해서만 지원된다.
- ③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된다. 사무직종사자,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(현장관리자 포함),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.

### ■ 금액

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/3(1일 상한액 3만5천원)를 지원한다.

### ■ 절차

- ① 계속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하절기, 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해야 한다.

- ② 공사기간, 근로자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
  - 사전에 계속고용변경계획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.
  - 사전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다.

### ■ 신청서류

- ① 계속고용 계획 신고 시 구비서류
  - 계속고용계획서
  - 사업자 등록·면허·허가 등 건설업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도급계약서
  - 계속 고용조치 대상자 명단
  -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각 1부
- ②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
  -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
  -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
  -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
  - 임금이체내역 등 임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- 기상자료 등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고용지원센터 (<http://www.molab.go.kr>)로 문의 바란다. ☎